

### 자동차인도명령신청

채 권 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겸 소유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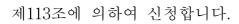
#### 신 청 취 지

채무자(겸 소유자)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## 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 손해배상(자)청구사 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권을 지금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귀원에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자 하는데, 미리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시키지 아니하면, 채무자는 현재 부도상태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채권자가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도 나중에는 자동차인도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,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귀원소속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을 민사집행규칙





# 첨 부 서 류

1.	집행력 있는 판결정본(사본)	1통
1.	판결정본송달증명원	1통
1.	자동차등록원부	1통
1.	자동차목록	1통
1.	송달료납부서	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##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

1. 자동차등록번호 ○○12가1234

1. 차 명 크레도스

1. 최 초 등 록 일 1999 -01 - 01

1. 년 식 1999

1. 원 동 기 형 식 T8

1. 형식 승인 번호 1-0462-004-003

1. 차 대 번 호 KNAGC2232TA163466

1. 사 용 본 거 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1. 소 유 자 ◇◇◇. 끝.

제출법원	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집행규칙 제113조	
불복절차	·즉시항고(민사집행규칙 제113조제4항)			
및 기간	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			
비 용	· 인지액 : 1,000원(🖙 단	민사접수서류에 붙	-일 인지액)	
	・송달료 : 당자사수×	000원(1회송달료)	×4회분	
	·①강제경매신청 전에 자	동차를 집행관에게	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	
	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	있는 때에는 그	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	
	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리	사 채무자에게 자동	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	
	할 것을 명할 수 있음.	②제1항의 신청에	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	
))	고, 신청의 사유를 소명	하여야 함. ③집행	관은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부	
기 타 	터 10일 안에 채권자가	강제경매신청을 ㅎ	·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	
	하지 아니하는 때에는	자동차를 채무자에	게 돌려주어야 함. ④제1항의	
	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	하여는 즉시항고를	할 수 있음. ⑤제1항의 규정	
	에 따른 결정에는 민사	집행법 제292조제2	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(민	
	사집행규칙 제113조).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